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9

관광건설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1999년 9월 1일

-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1999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1999년 9월 9일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 )

가. 제안이유

- 도로법('99.2.8) 및 동법시행령('99.8.6)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규정과 관련한 사무를 조정하고, 재해 등에 따른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비고란 제5호 및 제7호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신설 및 일부 삭제
  -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선정한다”로 신설
  - “별표1의 제6호의 경우”를 삭제
- 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
  -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 도로법 제44조 제4호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 도로법 제8조의2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신설)
-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신 익 수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본 조례의 모법인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무의 조정을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있어서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표시면적을  
중전에는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되어있던 것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으로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둘째, 점용료의 감면에서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던  
포괄적인 규정을 각 사안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셋째, 변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점용물의 종류를 구체화 시키고  
변상금 징수요율을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문화 하는 등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민원소지를 차단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붙임 서류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중 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산정한다.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중 “별표1의 제6호의 경우,”를 삭제한다.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점용목적에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에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1중 제1호 및 제2호의 점용물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점 용 물 의 종 류		
1.전주,공중 전화등 지 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이와 유사한것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 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 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수도관, 전 력구등 지 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	직경0.1m이하
	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0.1m초과 0.2m이하
		직경0.2m초과 0.4m이하
		직경0.4m초과 0.6m이하
		직경0.6m초과 0.8m이하
		직경0.8m초과 1.0m이하
		직경1.0m초과 2.0m이하
		직경2.0m초과 3.0m이하
	직경3.0m초과	
	어스양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것	직경0.1m이하
		직경0.1m초과 0.2m이하
		직경0.2m초과 0.4m이하
		직경0.4m초과 0.6m이하
		직경0.6m초과 0.8m이하
직경0.8m초과 1.0m이하		
직경1.0m초과 2.0m이하		
직경2.0m초과 3.0m이하		
직경3.0m초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 표

현행	조정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② ③(생략)</p> <p>④-----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p> <p>(신설)</p> <p>⑤(생략)</p> <p>⑥별표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p> <p>⑦(생략)</p> <p>⑧(생략)</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② ③(현행과 같음)</p> <p>④-----아니한다.</p> <p>⑤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산정 한다.</p> <p>⑥(현행제5항과 같음)</p> <p>⑦지하점용물-----</p> <p>⑧(현행제7항과 같음)</p> <p>⑨(현행제8항과 같음)</p>
<p>제6조(점용료의 감면)①(생략)</p> <p>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p> <p>1.(신설)</p> <p>2.(신설)</p> <p>3.(신설)</p> <p>③(생략)</p> <p>④(신설)</p>	<p>제6조(점용료의 감면)①(현행과 같음)</p> <p>②-----</p> <p>-----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p> <p>1.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p> <p>2.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p> <p>3.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p>

현행	조정
<p>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10조(변상금의 징수)-----                      -----의한-----                      -----의 100                      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p>



# 점용료산정기준개정

현행				개정(안)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제1항 관련) (금액단위 : 원)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제1항 관련) (금액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60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이와 유사한 것			600
	전주와 유사한 것	1개	1년	900		번압탑, 무선전화기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매단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900
	공중전화			24,100		공중전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현				개 정 (안)							
2.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전통신관,	직경0.1m이하	길이 1m	1년	150	2.수도관, 전역구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m	1년	150	
		직경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1.0m초과 2.0m이하			2,250					직경1.0m초과 2.0m이하	2,250
		직경2.0m초과 3.0m이하			3,750					직경2.0m초과 3.0m이하	3,750
		직경3.0m초과			5,250					직경3.0m초과	5,250
	기타의 관	직경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어스암카, 앞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m	1년	200		
		직경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1.0m초과 2.0m이하			3,350				직경1.0m초과 2.0m이하	3,350	
		직경2.0m초과 3.0m이하			5,600				직경2.0m초과 3.0m이하	5,600	
		직경3.0m초과			7,850				직경3.0m초과	7,850	